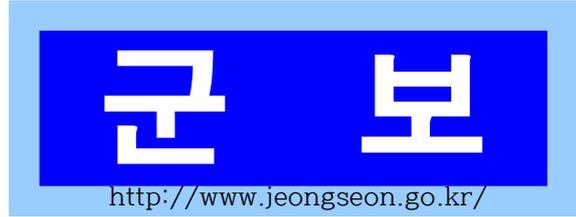


아리아리! 정선
the mecca of arirang, jeongseon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349호 2015. 2. 23. (월)

【조 례】

- 정선군 조례 제2406호 정선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 1
- 정선군 조례 제2407호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4
- 정선군 조례 제2408호 정선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7
- 정선군 조례 제2409호 정선군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 14
- 정선군 조례 제2410호 정선군 한국폴리텍Ⅲ대학 정선캠퍼스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 19
- 정선군 조례 제2411호 정선군 중소기업 공동도매 물류센터 관리 운영 조례 23
- 정선군 조례 제2412호 정선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 31

조 례

정선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5년 2월 23일

정선군 조례 제2406호

정선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정선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를 “정선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참고인등(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을 “참고인 등(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증인등”를 “증인 등”으로 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정선군의회 의원

제4조 중 “증인등”을 “증인 등”으로 “관하여는공무원”을 “관하여는 공무원”으로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제5조 중 “증인등”을 “증인 등”으로 “증인등”를 증인 등“으로 한다

제6조 중 “증인등”를 “증인 등”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정선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 관한조례</u></p>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u>참고인등(이하 "'증인등'"이라 한다)</u>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비용) ①<u>증인등</u>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로 한다. ② (생략)</p> <p>제3조 (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정선군의회의원 2. (생략)</p> <p>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u>증인등</u>에 대한 비용지급에 <u>관하여는공무원</u> 여비규정 별표 2의 <u>제3호</u>를 준용한다.</p> <p>제5조 (비용지급일수의 계산) <u>증인등</u>에게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u>증인등</u>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p> <p>제6조 (비용지급의 제한) <u>증인등</u>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 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u>정선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u></p> <p>제1조 (목적) ----- ----- <u>참고인 등(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u> ----- -----.</p> <p>제2조(비용) ①<u>증인 등</u>----- ----- -----. ② (현행과 같음)</p> <p>제3조 (비용지급의 예외) ----- -----. 1. <u>정선군의회 의원</u> 2. (현행과 같음)</p> <p>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u>증인 등</u> ----- -----<u>관하여는 공무원</u>----- ---- <u>제2호</u>----- .</p> <p>제5조 (비용지급일수의 계산) <u>증인 등</u> ----- <u>증인</u> ----- <u>등</u> ----- -----.</p> <p>제6조 (비용지급의 제한) <u>증인 등</u> ----- ----- -----.</p>

개 정 이 유

-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정활동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제명을 “정선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에서 “정선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
- 각 조항별 띄어쓰기 정비
- 개정된 규정에 맞게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3호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로 변경(안 제4조)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5년 2월 23일

정선군 조례 제2407호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법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u></p> <p>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4. (생략)</p> <p>5.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외의 출자·출연법인중 지방자치 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p> <p>② (생략)</p>	<p><u>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u></p> <p>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 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법인.</p> <p>② (현행과 같음)</p>

개 정 이 유

-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4의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제명을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서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변경
- 개정된 법령에 맞게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4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으로 변경 (제5조제1항제5호)

정선군 학술 연구용역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5년 2월 23일

정선군 조례 제2408호

정선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사무 중 학술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사전심의를 거쳐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그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연구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써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한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정책개발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와 실시설계용역 및 감리용역
2. 전액 국비나 국가보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3. 관계 법령에서 실시하도록 정한 용역
4.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등 긴급한 군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관리원칙)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1. 공정성·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예산의 효율적 집행
3.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제2장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제5조(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정선군 학술연구용역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유사·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및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세무회계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지방행정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본예산 편성 전에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서면회의 개최시에는 위원이 검토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심의안건 등을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개최 후 용역심의 의결서를 작성해야 하고, 그 사항을 용역 발주부서와 예산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심의대상 용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경우
2.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관련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수행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 3. 사망,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각종 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장 추진절차 및 방법

제13조(심의요청서 제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용역 심의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과제의 목적과 필요성
- 2. 주요 내용
- 3. 기간과 수행방식
- 4. 경비의 산출 내역
- 5. 기존 용역과의 유사·중복성
- 6. 결과물의 활용방안과 기대 효과
-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심의기준) 위원회는 제13조에 따라 제출된 용역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 1. 적합성
- 2.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 3.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15조(예산편성 등) 용역 발주부서(이하 “발주부서”라 한다)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해당 예산의 편성을 요구하여야 하고, 예산부서에서는 그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용역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16조(용역 실명제) 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공무원은 발주부서의 장, 담당 및 주무관으로 한다. 이 경우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그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군수는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주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과제담당관은 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
2. 진행상황의 점검 및 결과의 예비평가
3.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점검·평가 및 활용

제17조(연구진행상황의 점검)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의 연구진행 상황을 해당기간 동안 한 차례 이상 점검하고 점검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이 2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용역의 연구자(이하 “연구자”라 한다)가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그 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결과의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평가전문위원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평가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용역의 연구자 선정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평가의견을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결과의 공개 및 활용)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와 평가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을 말한다)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결과의 활용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성과점검) 군수는 매년 용역의 추진과정, 연구결과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부서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1조(계약사항 등)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의 사항을 용역계약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군수는 연구자가 부득이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연구계획 또는 기간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변경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구자를 교체하거나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에 발주부서에서 추진하였거나 추진중인 용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정 이 유

- 학술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 (안 제3조)
 - 모든 학술연구용역에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
 - 다만,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와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전액 국비 또는 국고보조금으로 시행하거나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적 용역, 1천만 원 이하의 용역, 천재지변 복구 등 긴급한 용역 등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
-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5조~제12조)
 - 위원회 구성, 임기, 회의 운영에 등에 관한 조항
- 추진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안 제13조~제16조)
 - 심의요청서 제출, 용역의 심의기준, 예산편성, 용역실명제 등에 관한 조항
- 용역진행상황 점검·평가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안 제17조~ 제20조)

정선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5년 2월 23일

정선군 조례 제2409호

정선군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

정선군수입증지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수입증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수입증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수료”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계기”란 제3조에 따른 증지를 수동으로 인영(印影)하는 기계(이하 “계기”라 한다)를 말한다.
3. “민원처리시스템”이란 전자증지를 인영하여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무인민원발급계기(이하 “무인계기”라 한다),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발급 및 방법)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수료의 징수를 위하여 정선군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를 발급한다.

② 증지는 계기의 증지 인영 또는 시스템의 전자증지로 증빙하는 증표로 발급할 수 있다.

제4조(규격 및 모양) ①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한다.

② 증지의 모양은 군의 심벌마크 또는 새마을운동 및 자연보호운동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제5조(계기의 관리) ① 군수는 계기를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을 그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계기를 신규 또는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폐기할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제2항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 또는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한다.

1. 발행기관명, 고유번호, 발행장소 및 발행개시일
2. 변경사항 및 변경일
3. 그 밖에 폐기일 등 필요한 사항

제6조(무인계기의 설치) ① 무인계기의 설치부서의 장은 이를 신규 또는 변경하여 설치하거나 폐기하고자 할 경우 고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고시는 제5조제3항에 따른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 및 “계기”는 각각 “설치부서의 장” 및 “무인계기”로 본다.

제7조(사용방법) ① 관리책임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수납한 후에는 해당 민원서류에 증지를 인영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해야 한다.

1. 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

제8조(수수료의 징수) ① 군수는 수수료를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경우 외에는 증지로 징수한다.

② 수수료는 그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① 제8조에 따른 증지의 수입금(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1. 현금으로 징수한 때에는 그 다음날

2.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 때에는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한 그 다음날

② 수입금은 일일결산을 해야 하며, 일일결산은 별지 서식의 일일결산 대장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③ 계기 및 시스템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그 사유를 일일결산 대장에 기재 및 시스템에 입력하여 결손 처리한다. 이 경우 해당 증지 원본은 일일결산 대장에 별지로 첨부하여 이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10조(영수증 발행) 증지는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수수료 납부자가 별도의 영수증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기로 인영하는 민원서류에 한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제11조(변상책임)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개정 규정 중 신용카드를 통한 수수료 납부는 단말기 등의 기기를 설치한 후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었거나 처리 중인 증지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종이수입증지의 폐기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종이수입증지는 이를 폐기한다.

제 정 이 유

- 『정선군 수입증지 조례』의 판매인 지정 등이 불필요한 규제로 행정자치부 지방규제 개혁추진단(2014.9.30)에서 발굴되어 이를 정비하고 종이수입증지의 미사용으로 인한 관련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민원처리시스템 등의 개념 정의 (안 제2조).
- 정선군수입증지 발급방법을 정함 (안 제3조).
- 증지의 규격과 모양을 정하였음 (안 제4조).
- 수입증지요금 계기(무인계기 포함)의 관리 및 설치방법을 정함 (안제5조, 제6조).
- 증지 인영 시, 표시사항을 정함 (안 제7조).
- 증지 수입금의 납입, 정산, 영수증 발행 및 변상책임 등을 정함 (안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정선군 폴리텍 III대학 정선캠퍼스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5년 2월 23일

정선군 조례 제2410호

정선군 한국폴리텍III대학 정선캠퍼스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정선군 한국폴리텍III대학 정선캠퍼스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한국폴리텍Ⅲ대학 정선캠퍼스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06.09.30 조례 제202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06년 1월 26일 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체결된 한국폴리텍Ⅲ대학 정선 캠퍼스(이하“학교”라 한다)의 공동협력·운영에 관한 협약서에 의거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사업의 범위) ①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학교를 관광레저분야 전문교육기관으로 특성화하는데 필요한 교육경비를 지원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원대상 사업(이하“지원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관광레저분야 특성화를 위한 학교 시설투자 및 개선사업
2. 우수교원 및 우수학생 유치에 필요한 사업
3. 지역사회와 연계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지원사업의 신청) ① 학교장은 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 별지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학교장이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심의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심의위원회) 군수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 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위원은 군의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 장, 산업경제과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군 의회 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인, 민간인(또는 학부 모) 1인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나,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여부 결정
2.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규모 결정
3. 기타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무를 통할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특별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당해업무담당이 된다.

- ② 간사는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정기회는 매년 지원사업 대상 심의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학교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정선군 각종위원회 등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선군 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정 이 유

- 한국폴리텍Ⅲ대학 정선캠퍼스가 2009. 2. 28. 폐교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정선군 한국폴리텍Ⅲ대학 정선캠퍼스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정선군 중소기업 공동도매 물류센터 관리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5년 2월 23일

정선군 조례 제2411호

정선군 중소기업 공동도매 물류센터관리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중소기업인 및 농·특산품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정선군이 건립하는 중소기업 공동도매 물류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 공동도매 물류센터(이하 “물류센터”라 한다)”란 공산품과 지역 농산물·임산물·축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물류 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 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2. “물류센터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란 물류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물류센터는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신동읍 의림로 141-70 일원에 둔다.

제4조(기능) 물류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내 슈퍼마켓, 영세점포 등에 상품의 유통·물류기능의 공동화·효율화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체의 자생적 경쟁력 확보
2. 농·임·축산물 및 그 가공식품의 집하, 선별, 세척, 가공, 포장, 출하, 저장, 판매
3. 전국 대형 유통업체, 도·소매업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출하 및 판매
4. 학교·공공기관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우수 식재료 공급
5.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판매 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 수집
6. 그 밖에 물류센터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

제2장 운영위원회

제5조(설치 및 구성) ① 물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지역경제과장, 농협중앙회 정선군지부장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은 군의회 의원, 농업관련 단체장, 취급품목 생산자 대표,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담당으로 한다.

제6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통구조개선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공산품과 농산물 조달·공급체계에 관한 사항
2. 운영주체 선정, 관리운영 위탁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물류센터 시설물 활용에 관한 사항 및 이용료 결정
4. 그 밖에 군수 또는 운영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결정

제7조(회의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위탁운영 및 관리

제9조(위탁) 물류센터는 군수가 직접 관리 운영하되,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등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군수가 자본금을 전액 또는 현물로 출자한 지방공기업
2.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 또는 법인
3.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70조의 유통자회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1호의 지역농·축·산림조합
4. 지역농협, 지역 농·특산물 생산자단체나 법인, 지역 전통시장조합, 물류도매상 등이

공동으로 참여·출자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5. 그 밖에 물류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 군수가 공산품 및 농·수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위탁신청 및 선정) ① 군수는 운영주체를 공개적인 방법으로 모집한다.

- ② 물류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운영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신청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4.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 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6.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3~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 확대분산능력,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물류센터 위탁관리·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2항에 따라 관리·운영 위탁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후 운영주체를 선정한다.

- ④ 군수는 운영주체가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한다.

- ⑤ 물류센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⑥ 물류센터의 위·수탁에 따른 제반사항 결정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11조(위탁의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위탁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등 제반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운영주체가 위탁 취소를 원할 때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물류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② 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운영주체가 위탁 취소를 원할 경우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의무 등) ① 운영주체는 시설물관리, 공산품과 농·임·축산물의 집하, 선별, 가공, 포장, 출하, 저온저장, 판매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해야 한다.

- ② 운영주체는 생산자 단체 및 대규모 출하농가 등과 대량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등

농산물의 유통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에서 생산되는 농·임·축산물 및 그 가공식품을 우선적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인근 시·군의 농·림·축산물 및 그 가공품을 취급할 수 있다.

③ 운영주체는 물류센터의 토지, 건물 및 물류장비 등 위탁받은 재산을 유지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와 함께 물류센터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④ 운영주체는 연 2회 이상 물류센터의 운영 및 관리실태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3조(이용료) 물류센터의 이용료는 관계법령의 범위안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이용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권리양도의 제한) 운영주체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5조(원상복구) 운영주체는 물류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11조에 따라 위탁이 취소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물류센터를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장부비치)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 그 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
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관리대장
4. 비품관리대장
5. 그 밖에 물류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부

제17조(지도감독) 물류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군 소속공무원 중 군수가 지정하는 부서의 담당자를 물류센터 관리자로 둔다.

제18조(필요경비 지원 등) 군수는 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요금 및 시설관리 등 최소한의 필요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에 관한 적용특례)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물류센터의 조기정착을 위해 설립 후 최초로 위탁하는 경우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명·선정 위탁하게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정선군 중소기업 공동도매 물류센터 관리·운영 위탁신청서

신 청 인	법 인 명		대 표 자	
	주 소			
	취 급 품 목			

「정선군 중소기업 공동도매 물류센터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정선군 중소기업 공동도매 물류센터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①

정선군수 귀하

< 첨부서류 >

1. 정관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신청당시의 당해법인의 대차대조표
4.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6.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3~5년간의 사업계획서
7. 제10조제2항제7호에서 정하는 사항

[별지 제2호서식]

정선군 중소기업 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운영 위탁 지정서

물 류 센 터 명			
법 인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취 급 품 목			
사 용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간)	
	년 월 일 까지		

「정선군 중소기업 공동도매 물류센터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정선군 중소기업 공동도매 물류센터의 관리·운영 위탁운영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

제 정 이 유

- 지역 중소기업인 보호 및 농·특산품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정선군이 건립하는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물류센터의 기능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물류센터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5·6·7·8조)
- 위탁운영 및 관리 할 수 있는 운영주체의 범위(자격)를 규정함(안 제9조)
- 위탁신청 및 선정절차를 규정함(안 제10조)
- 위·수탁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둠(안 제10조제5항)
- 물류센터 시설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3조)
- 위탁운영 시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공요금 및 시설관리 등 최소한의 필요경비 지원사항을 규정(안 제18조)

정선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5년 2월 23일

정선군 조례 제2412호

정선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 지원 및 관련 생태계 조성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생산, 분배, 교환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사회적경제를 위하여 활동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국가 또는 강원도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나.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 강원도지사 또는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한 마을기업
 - 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마.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의 근로 사업장, 보호 작업장, 생산품 판매

시설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조직 등과의 가교 역할 및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등 관련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

사.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조직

3.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조직이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조직 및 관계망을 말한다.

4. “사회적경제 생태계(이하 “생태계”라 한다)”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발전, 시장의 조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 및 재투자 등이 선(善)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5. “거버넌스(governance)”란 군수가 행정 및 정책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등의 제고를 위하여 각 분야의 활동주체와 정책의 의제형성, 목표설정 및 결정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정책네트워크 또는 새로운 방법에 따른 그 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2장 육성 지원사업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율적 활동 촉진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정선군 사회적경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
2.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3. 지역경제 활성화
4. 관련기관간의 협력
5. 재정, 교육, 홍보 등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촉진) 군수는 군 소재 민간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경제조직에 관한 교류·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동 지원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경영지원) 군수는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영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사회적경제 전문인력의 양성과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3.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 사업

제7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한정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제1항의 지원금을 해당 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그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 ④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간의 협력, 시민사회와 연대, 지역사회공헌 활동,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민간협의회를 구축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우선구매 촉진 등)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그 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1. 모범사례의 발굴
 2. 홍보 지원
 3. 주민 교양강좌, 전문가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인식 확산
 4. 관련법령에 따른 행사 등 사업 실시

제3장 사회적경제 위원회

제9조(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사회적경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 ④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경제과장, 도시건축과장으로 한

다.

1.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식견을 갖춘 전문가, 현장 활동가, 중간 지원조직의 대표
 2.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3.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⑥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조직의 발굴 및 지원
3.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
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위촉해제) ① 군수는 금품·향응수수, 배임·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또는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때
3.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본인 또는 그가 속한 법인·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할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⑥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등) 위원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 관리해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갈음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하고 그 서면으로 보존 관리할 수 있다.

제4장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제15조(설치 및 업무)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운영에 이르기까지 종합적 지원을 위하여 정선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조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굴 및 설립 상담
 2. 교육 및 경영 컨설팅
 3. 거버넌스 및 민간네트워크 협력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업무

제16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모집으로 하며, 개소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선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그 계획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계약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및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수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재위탁 받고자 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2항의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재위탁기간이 만료된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은 제16조에 따른다.

제1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항 및 군수의 지도·감독사항
2. 예산안·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매년 군수에게 제출
3. 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받지 못할 경우 군에서 지원한 해당 시설과 장비·비품 등 일체 반환
4.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그 권리의 양도나 대여 금지
5. 계약 체결 시 이행보증보험 가입 또는 재정보증

제19조(계약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련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운영한 때
2.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그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3.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

4. 제1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군수는 위탁기간 중 법령이나 조례의 제·개정 또는 폐지로 지원센터의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의 위탁운영 실태에 대하여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요구, 경고, 종사자의 징계요구, 지원센터의 운영정지·시설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1조(준용)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정선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른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정선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 정 이 유

- “사회적경제” 붐 확산과 (예비)사회적기업, 마을(주민)기업, 협동조합 연계 육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위원회 구성 및 재정지원 등 지원체계 구축 필요.
- 정선군형 예비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여 행정자치부 마을기업 및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군민 일자리창출과 안정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정선군 사회적경제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및 제2조)
- 정선군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육성 및 재정지원 등의 근거를 명시함.
(안 제4조 내지 제8조)
- 군 사회적경제 위원회 설치, 기능, 임원구성 및 운영방법 등을 규정함.
(안 제9조 내지 제14조)
- 사회적경제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설치 및 운영 방법 등의 근거를 마련함. (안 제15조 내지 제20조)